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우대사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격무 또는 기피 민원 분야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14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선(안 제20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나. 국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규칙에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략)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u>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u>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② ----- ----- ----- ----- ----- ----- ----- <u>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u> -----.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u> <u>가.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u> <u>나. 국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u>규칙에서</u>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u>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